

Contents

1

근로장려세제 개요

- 03 근로장려세제 개념
- 03 도입배경
- 03 기대효과

2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과 적용단위

- 05 적용대상
- 05 적용단위 : 세대단위 적용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08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 10 총소득요건
- 10 주택요건
- 10 재산요건
- 11 신청제외자

4

근로장려금 산정

- 13 산정모형
- 16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의 범위
- 17 근로장려금 결정

5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 19 신청준비
- 19 신청기간
- 19 전자신청 제도
- 20 신청방법
- 20 지급
- 20 불복절차
- 20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1



근로장려세제의 개요

근로장려세제 개념 | 도입배경 | 기대효과



Earned Income Tax Credit

열심히 일하는
행복한 소득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개념

- ❖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 ❖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일은 하고 있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자 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 저소득자 계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 ❖ 저소득자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 ▶ 저소득자 계층 중 일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령·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혜택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보호가 취약합니다.

저소득자 계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 ❖ 저소득자 계층이 극빈층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 저소득자 계층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져서 근로활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2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과 적용단위

적용대상 | 적용단위 : 세대단위 적용



열하면 늘어나는 **행복 소망**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 ❖ 2009년 도입 때는 소득파악 수준이 높은 근로자 계층부터 적용하였습니다.
- ❖ 적용대상은 계속하여 넓혀가고 있습니다.
 - ※ 2012년부터 사업소득자 중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 2015년부터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전체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적용단위 : 세대단위 적용

- ❖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 · 방문판매 소득("총급여액 등"이라 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도 합산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합니다.
- ❖ 세대의 총급여액 등을 반영하여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장려금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 총소득요건 | 주택요건 | 재산요건 | 신청제외자



열하면 늘어나는 근로장려세제

개 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이 있는 세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 부양자녀 · 연령 요건

- 18세미만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거나 2012. 12. 31. 현재 60세 이상('52.12.31. 이전 출생)인 경우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인별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2. 총소득요건

- 2012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 총소득이란 사업소득(보험모집과 방문판매 소득 제외) ·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소득과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3. 주택요건

- 세대원 전원이 2012. 6. 1.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여야 합니다.

4. 재산요건

- 세대원 전원이 2012. 6. 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나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13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단, 2012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는 신청가능)
2. 2012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3. 201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 · 부양자녀 · 연령 요건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의 범위

- ▶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이어야 합니다.
- ▶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를 말합니다.
- ▶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부양할 수 없어 조부모 · 형제자매가 동거 부양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피부양 손자녀 · 형제자매도 부양 자녀로 인정합니다.
- ▶ 부양자녀의 인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령 기준

- ▶ 18세 미만 이어야 합니다.(2013년 신청의 경우 1994. 1. 2. 이후 출생자)
- ▶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자녀 연령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 부양자녀의 생계 기준

- ▶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 ▶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 ▶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형제자매)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부양자녀의 판정 시기

- ▶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부양자녀가 2012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 되는 날이 있는 경우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 한 부양자녀에 대해 복수의 거주자가 신청 시 신청자격 순서

- ①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자
- ②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나 그 생계를 같이 한 기간이 긴 자
- ③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 ④ ②, ③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배우자 유무와 60세 이상의 판정은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2012년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총소득요건

- ❖ 2012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의 합계액이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거나 60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 ▶ 부부의 총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합니다.

합산대상 총소득의 범위

- ▶ 사업소득(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소득 제외) ·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소득과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만 합산합니다.

주택요건

- ❖ 세대원 전원이 2012년 6월 1일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소규모 주택 1채만 소유하여야 합니다.

- ▶ 소규모 주택이라 함은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 ▶ 주택보유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 경우 세대원은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요건

- ❖ 세대원 전원이 2012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보며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의 범위

- ▶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재산자료에 의해 재산규모와 평가액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특정재산으로 한정합니다.
-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예금·적금·저축성 보험 등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신청제외자

-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2013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다만, 2013년에는 2012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 2012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신청가능)
- ▶ 201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근로장려금의 산정

산정모형 |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의 범위 | 근로장려금 결정



열하연 늘어나는 행복 소망 근로장려세제

산정모형

- ❖ 부양자녀수에 따라 2012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만원)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분의 7
600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 ~ 1,300만원 미만	(1,300만원 - 총급여액 등) × 40분의 7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분의 7
800 ~ 1,200만원 미만	140만원
1,200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 - 총급여액 등) × 100분의 28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분의 17
900 ~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 ~ 2,100만원 미만	(2,100만원 - 총급여액 등) × 90분의 17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분의 2
900 ~ 1,200만원 미만	200만원
1,200 ~ 2,500만원 미만	(2,500만원 - 총급여액 등) × 13분의 2

※ 단, 근로장려금은 위 산식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며 위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총급여액 등만 있는 경우

- ▶ 주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800만원) ➡ 근로장려금 70만원(최대지급액)

◆ 총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 제외)이 함께 있는 경우

- ▶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사업소득이 300만원일 때
총소득 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595천원

사례2 <<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 총급여액 등만 있는 경우

- ▶ 주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0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500만원) ➡ 근로장려금 893천원

❖ 총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 제외)이 함께 있는 경우

- ▶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 사업소득이 300만원일 때
총소득이 1,2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40만원

사례3 <<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 총급여액 등만 있는 경우

- ▶ 주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1,2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7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900만원) ➡ 근로장려금 378천원

❖ 총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 제외)이 함께 있는 경우

- ▶ 총급여액 등이 1,000만원, 사업소득이 800만원일 때
총소득이 1,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1,0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0만원

사례4 <<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총급여액 등만 있는 경우

- ▶ 주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1,2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7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900만원) ➡ 근로장려금 924천원

❖ 총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 제외)이 함께 있는 경우

- ▶ 총급여액 등이 1,600만원, 사업소득이 1,000만원일 때
총소득이 2,6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불충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의 범위

- ❖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 제외)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배우자 중 **주 소득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합니다.**
- ❖ 다만, 아래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소득

근로장려금은 소득세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므로 과세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 소득세 체계에 부합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가족이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가족의 급여 등은 사실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소득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에 의해 고용되거나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비사업자에게 고용 또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가사보조원 등)에는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주 소득자의 결정

▶ 근로장려금은 세대단위로 지급되므로 부부 모두 총급여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된 주 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주 소득자 결정 순서

- ①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② 총급여액 등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사람

근로장려금 결정

- ▣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수에 따라 2012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예시)

(단위 : 원)

총급여액 등		부양자녀 수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0명	1명	2명	3명 이상
최소금액	128,570	0	23,000	25,000	29,000
5,900,000	6,000,000	700,000	1,050,000	1,134,000	1,334,000
6,000,000	6,100,000	700,000	1,068,000	1,153,000	1,356,000
:	:	:	:	:	:
8,500,000	8,600,000	700,000	1,400,000	1,625,000	1,912,000
8,600,000	8,700,000	700,000	1,400,000	1,644,000	1,934,000
:	:	:	:	:	:
9,000,000	9,100,000	700,000	1,400,000	1,700,000	2,000,000
9,100,000	9,200,000	683,000	1,400,000	1,700,000	2,000,000
9,200,000	9,300,000	665,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	:	:	:
12,100,000	12,200,000	158,000	1,372,000	1,682,000	1,985,000
12,200,000	12,300,000	140,000	1,344,000	1,663,000	1,970,000
:	:	:	:	:	:
16,946,430	17,100,000	0	0	756,000	1,231,000
17,100,000	17,200,000	0	0	737,000	1,216,000
:	:	:	:	:	:
23,100,000	23,200,000	0	0	0	293,000

* 부양자녀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총 급여액 등의 최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총급여액) 최소금액	128,570원	85,710원	79,410원	67,490원

5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신청준비 | 신청기간 | 전자신청 제도 |
신청방법 | 지급 | 불복절차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열하면 늘어나는  근로장려세제

신청 준비

-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재산 증거서류

- ① 주택을 임차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시 간주전세금 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신청 기간

-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까지입니다.

전자 신청 제도

- ❖ ARS(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www.eitc.go.kr) 신청 등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전자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 휴대전화 신청은 무료이며, ARS 신청은 통신료(유선 39원/3분, 휴대전화 250원/3분)가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

- ❖ 주 소득자가 ARS(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신청하여야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 ❖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 ▶ 심사과정에서 신청내용과 사실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지급제외 또는 지급되는 금액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 ❖ 주 소득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불복절차

- ❖ 국세기본법의 불복규정 적용
 - ▶ 근로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의 불복규정을 적용합니다.
- ❖ 불복청구 절차
 - ▶ 청구인 : 근로장려금 신청자
 - ▶ 불복청구 대상 : 지급거부, 감액지급, 취소, 경정감액 등
 - ▶ 청구기간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환수와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2년
 -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5년
 - ▶ 환수 : 환수금액 × 신청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 3/10,000